제925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특정국가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 및 허가지침 신설, 수출지역 조정(강화) ㅇ 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추가하여 총 1,159개로 확대되는 바, 향후 1,159개에 해당하는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 산업부 등 허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함 - 이러한 러시아,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, 기존 계약분 등 사안별 심사기준에 해당시 심사를 통해 허가 발급 가능 ㅇ 이란,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나의1 지역에서 나의2 지역으로 조정(강화)하여, 포괄수출허가 발급 및 개별수출허가 면제 등이 제한됨 ▶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-2,별표24.별표6	1.비중요
2	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(농림축산식품부)	1.전문농업경영인 지정취소 사유 구체화(강화) ㅇ 농업마이스터 지정취소 근거를 활동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- ① 최근 5년간 현장실습교수, 멘토, 컨설턴트 등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, ②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▶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지정에 관한 규정 제30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진료수가 인정범위 등(신설) ○ 약침횟수 구체화 –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,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, 2~3주까지는 주 3회, 4~10주까지는 주 2회,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 ○ 첩약 진료수가 적용기준 개선 –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첩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방·조제한 경우에 인정함 –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– 의료기관은 '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'을 통해 '자동차보험 첩약 처방 · 조제내역서'(별지 제13호서식)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○ 약침술 일반원칙 마련 –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·멸균 약침액을 사용한 경우에 인정하며, 시행부위 및 처방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 –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에게 약침 처방시 "약침 관리시스템"을 통해 "자동차보험 약침 조제내역서"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▶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4	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장애아돌보미 자격정지 기준(신설) ㅇ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내용인, 「시 · 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」을 위반행위별로 구체화하여 규정 ▶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의2	1.비중요
5	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(질병관리청)	1.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(신설) ㅇ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으로서 인력, 조직, 시설, 진료실적,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▶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1항	1.비중요
6	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(보건복지부)	1.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강화(강화) ㅇ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강화 – ①입원실 내 환기시설의 운영기준(시설 종료 및 환기 횟수) 강화 – ②음압격리병실 의무설치 기준 상향 – ③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– ④중환자실 1인실 설치 의무 부과 ▶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	1.중요
7	소방장비에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(소방청)	1.인증대상 소방장비(별표1)(강화) ㅇ KFAC 인증 9종 추가 (소형사다리차, 특수구급차, 방화두건, 방화장갑, 소방자동차 압축공기포소화장치, 사이렌, 안전헬멧, 방화헬멧, 방화신발) ※기존 6종: 소방펌프차, 소방고가차, 소방물탱크차, 소방화학차, 구조차, 방화복 ▶소방장비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,제3조,제4조,제5조	1.비중요